

의안번호	2203360
의 퇴 인	황운하 의원
회 답 일	2024.09.24.
추 계 번호	24C330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가 취업, 진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한 경우 지역인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의 ‘지역인재’는 법 제2조의 “지역균형인재”¹⁾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임
 - 향후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에 대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금액이 될 것이나,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기준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기준 등에 대한 예상이 곤란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인재’가 ‘취업, 진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한 경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은 추가 지원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 법 제16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추가로 실시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지원대상이 될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기준과 경제적 자립 지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금액은 '23년 기준 총 4,335억원(186,338명)²⁾이나, 이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정착할지 여부와 원금·이자 면제 등 학자금대출에 대한 방법 및 지원 기준, 금액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³⁾

※ [참고자료] 서울·경기·인천 지역 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내역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기준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한 경우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2) 대학 소재지 기준, 인원은 학기별 단순합계임(자료: 교육부)

3)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외에 ‘일반학자금 대출’은 2023년 기준 3,555억원(113,992명)임

[참고자료] 서울·경기·인천지역 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내역

(단위: 억 원,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7월까지)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부산광역시	681	32,582	651	28,683	386	16,811
대구광역시	304	14,801	300	13,338	176	8,325
광주광역시	271	13,730	270	12,485	155	7,053
대전광역시	328	15,741	322	14,205	186	8,011
울산광역시	89	4,039	86	3,651	48	1,999
세종특별자치시	84	3,178	76	2,791	43	1,501
강원특별자치도	347	15,181	317	13,361	180	7,409
충청북도	334	15,101	307	13,093	178	7,682
충청남도	691	28,018	653	25,118	369	14,259
전북특별자치도	330	15,489	314	13,600	175	7,547
전라남도	164	8,548	148	7,195	81	3,972
경상북도	581	26,362	564	23,679	319	14,140
경상남도	308	14,970	283	12,956	149	6,723
제주특별자치도	45	2,496	44	2,183	24	1,030
합 계	4,557	210,236	4,335	186,338	2,469	106,462

주: 대학소재지 기준, 인원은 학기별 단순합계임
자료: 교육부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